

국제산업보건동향

미국

노동통계국(BLS), 2007년 미국 내 산업재해 및 질병 통계 발표

〈2008년 10월자 미국 BLS 홈페이지〉

미국 노동통계국(BLS)에서는 2007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및 질병과 관련한 통계를 발표하였으며, 2007년 산업재해 및 질병 통계는 산업재해 보고체계가 변경된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.

• 2007 산업재해 및 질병조사 주요 결과

- 2007년에 발생한 경상 및 가벼운 질병의 발생률은 정규직 근로자 100명당 4.2명 수준으로 2006년의 4.4명 대비 감소하였다. 2007년의 전체 경상 및 가벼운 질병 발생건수는 4백만 건으로 2006년의 410만건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러한 수치는 2007년의 일반상해 및 질병 발생률은 기록유지 관련규정이 개정된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, 전체 일반상해 및 질병발생 건수(400만건) 가운데 상해 건수가 380만건을 차지하여 전체의 94.8%에 이르고 있다.
- 질병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전체 400만건의 일반상해 및 질병발생 건수(400만건) 가운데 6% 미만을 기록하였으며, 사업주의 보고에 따른 질병발생건수는 2006년의 228,000건에 비해 21,700여건이 감소한 206,300건을 기록하였다. 질병발생 비율은 2006년의 24.6건에서 2007년에는 21.8건(근로자 10,000명당)을 나타냈다.

- 미국 노동부장관(Elaine L. Chao)은 2008년 10월 23일자 논평을 통해 미국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및 질병 발생률이 4년 연속 감소하였다고 미국 노동통계국(BLS)의 자료를 인용하여 발표하였다. 경상 및 가벼운 직업성 질병의 발생률은 2006년에는 4.4건(정규직 근로자 100명당)에서 2007년에는 4.2건으로 감소하였으며, 지난 6년간 21%의 감소를 보인 것과 작년 대비 4.5% 감소한 것은 OSHA의 지속적인 재해예방활동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, “현재 미국의 근로자는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근로에 임하고 있으나, OSHA의 지속적인 감독활동과 규제활동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”이라고 지속적인 재해 및 질병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.

※OSHA :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
※BLS : Bureau of Labor Statistics

〈출처〉

<http://www.bls.gov/news.release/osh.nr0.htm>

〈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홈페이지〉

유럽연합(EU)은 과거 회원국들이 자율적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던 산업재해 통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,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유럽연합의 제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자 산업재해통계 등에 관한 규정 제정(안)을 발표하였다.

- 유럽연합(EU)의 산업재해통계 등에 관한 규정은 산업안전보건 및 공중보건에 관한 유럽연합 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되었다. 본 규정에서는 사망원인, 산업재해, 직업병, 기타 직업관련성 질병 및 질환과 관련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, 각 유형별로 사망재해의 경우는 세계보건기구(WHO)의 권고안에 따른 사망재해를 기준으로 작성하고,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를 통계정보로 다룰 예정이다. 통계자료는 정기적인 조사(1년 단위)를 통해 EU 회원국 관계 당국 및 산업재해보고기관으로부터 수집할 예정이다.

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통계생산을 위하여 각종 매뉴얼, 지침, 권고 등을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작성·보급하고, 회원국은 통계자료의 질적 내용이 부족하거나 통계데이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파이롯트(Pilot)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. 회원국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통

계 데이터와 메타(Meta) 데이터를 제출(세부사항은 매뉴얼 또는 지침으로 발간)하고,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또는 유럽연합 통계청은 산업재해통계 등의 보급, 이용 및 문서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.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매 5년마다 공표된 데이터에 대한 비교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게 된다.

- 유럽연합의 산업재해통계 등에 관한 규정에는 ① 건강상태 및 건강결정에 대한 범위(Health Status and Health Determinants) ② 건강 관리(Health Care) ③ 사망의 원인(Causes of Deaths) ④ 직업성 사고(Accidents at Work) ⑤ 직업성 질병, 기타 직업관련성 질환 및 질병 등 (Occupational Diseases and other Work-related Health Problems and Illnesses)이 포함되어 배포된다.

※EU : European Union

제공 | 한국산업안전공단 국제협력팀